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. 2. 24 선고 2020가단145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1. 1. 13.

판결 선고 2021. 2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는 ① 밀양시 C 답 3,473m², ② 밀양시 D 답 478m², ③ 밀양시 E 답 1,856m² 각 지상 비닐하우스 5동을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피고는 2019. 6. 1.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4,464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신성훈

별지